

# 高層建物의 防火安全管理

劉 奉 植  
<서울特別市 消防本部長>

<目 次>	
1. 序 論	
2. 現 況	
가. 對 象	
나. 建築構造設備面	
다. 消防設備面	
라. 自衛消防體制面	
3. 問題點	
4. 結 論	

## 1. 序 論

國民所得의 劃期的인 向上과 輸出市場의 多元開發로 因한 產業施設의 擴充과 規模의 增大는 모든 側面에서 社會의으로 構造의인 變化를 갖어오게 하였다.

特히 1960年代의 中半以後 人口의 大都市集中現象은 서울市의 人口를 800萬名線으로 增加시켰고 이에 따른 經濟需要와 生產活動面에서도 國內外的으로 迅速한 情報活動의 必要性이 要請됨에 따라 各種 企業들도 서울을 中心으로 하여 母企業의 基盤形成이 始作되었고 社勢의 規模는 마치 建築物의 높이와 面積의 크기로 比例라도 되는 것처럼 大型高層建物이 서서히 登場하기始作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나라를 찾아오는 外國손님의 數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을 맞이하여 야 할 宿泊施設의 充當을 為하여서는 많은 觀光호텔을 짓어야 할 必要性이 要請됨에 따라 都心地에는 빠른 速度로 大型高層 호텔建物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나아갔다.

이와같은 現象은 自然의으로 時間과 空間을 가장 効果的으로 活用하기 為한 都市開發로 이어짐으로써 大多數 建築物이 高層大型化되었고 構造面에서도 複雜 多樣化되었을 뿐만 아니라 文化生活의 惠澤을 最大限으로 包容하기 為한 附帶施設을 갖추게 되었고 이와같은 施設을 運營하기 為하여 必要로 하는 電氣, 油類, 가스等을 大量으로 使用하게 되었으며 카페트나 커튼等 石油化學製品의 內裝物 使用 等으로 高層建物의 防火安全管理上 새로운 問題點으로 檢討되어야 할 社會問題가 擙頭되었으며 問題點의 解決을 為하여서는 앞으로 不斷한 研究와 努力이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 2. 現 況

### 가. 對 象

消防法上 高層建物이라 함은 同法 第11條 第1項에 規定된 높이 15m를 超過하는 建築物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높이의 概念에서 보는 高層의 建築物이고 火災의 鎮壓作戰이나 消防施設의 規制面에서 본다면 11層以上의 超高層建築物을 對象으로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市內에 現存하고 있는 11層以上의 層別高層建物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市內 11層以上 高層建物 現況

層別 用途別	計	11~15層	16~20層	21~25層	26~30層	31~35層	36層以上	備考
		15層	20層	25層	30層	35層		
計	513	454	46	8	3	1	1	
호텔	25	11	8	3	2		1	
其他	488	443	38	5	1	1		

#### 나. 建築物의 構造設備面

建築物을 管理함에 있어 가장 警戒하여야 할事故는 建築物의 崩壞 또는 火災의 發生을 들수 있을 것이다.

前者의 境遇는 建築工事 過程에서나 또는 強度上 不實施工에 依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現象으로 이와 같은 事故는 거의가 그 事例를 찾아보기 어려운 反面 後者의 境遇는 建築物의 強度와 別途로 構造的인 面에서 防火區劃이라든가 避難階段 또는 內裝材의 不燃化 未備等 構造의in 缺陷이나 管理疎忽 等으로 因하여 火災事故는 언제나 發生될 수 있는 것이며 그 程度에 따라서 人命과 財產上의 被害規模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平素 高層建築物의 火災豫防과 有事時 鎮壓活動을 가장 効果的으로 違行하기 為하여서는 그 建物에 對한 脆弱要因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是正하고 補完하는가에 그 成敗가 달려 있다 할 것이다.

空氣가 疎通되는 空間에서 可燃物에 불씨가 接하게 되면 燃燒現象이 일어나고 그것이 活性化되었을 때 火災로 擴大되어 간다는 火災理論으로 보아 모든 高層建物은 火災의 發生과 延燒

擴大要因을 完全하게 排除할 수 없는 脆弱要因을 안고 있는 實情인 것이다.

高層建物을 新築할 때에는 建築法에 依하여 이와 같은 問題點을 充分히 檢討하고 事前補完하기 為하여 建築法施行令 第4章으로 耐火構造防火構造, 防火區劃 等에 對한 技術基準과 第5章에서는 避難施設 等에 對하여 갖추어야 할 基準을 定하고 있어 最近에 新築되는 建築物은 大體의으로 安全性을 確保하고 있어 多幸한 일이라고 生覺된다.

그러나 1973年 以前에 竣工된 建築物의 境遇에는 大部分이 防火區劃 또는 特別避難階段의 構造가 未備되어 있거나 內裝材가 不燃化되어 있지 않고 特히 커피나 카페트와 같이 有毒性 發煙系數가 높은 易燃性 可燃物質들이 大量으로 使用되고 있어 大多數의 高層建物은 大型火災發生要因을 안고 있어 防火管理面에서 보다 完壁을 期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生覺된다.

#### 다. 消防施設

消防法 第29條의 規定에 依하여 特殊消防對象建物에 갖추어야 할 消防施設은 大概 5種으로 區分할 수 있다.

(1)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消火를 目的으로 設置하는 施設로는

- 消火器具(簡易消火器具等을 말함)
- 屋內 및 屋外消火栓 設備
- 스프링크라 設備
- 물噴霧 消火設備
- 泡沫 消火設備
- 不燃性 가스 消火設備
- 蒸發性 液體 消火設備
- 粉末 消火設備 等이 있다.

(2) 火災發生을 感知하여 早期에 警報를 發하여 줌으로서 初期鎮壓과 待避에 迅速을 期할 수 있도록 하기 為한 警報設備에는 다음과 같은 種類가 있다.

- 自動火災探知 設備

○ 消防機關에 通報하는 火災速報 設備 自動  
火災速報 設備

○ 其他 電氣 가스 等의 探知設備

(3) 建物內에서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建物外部로 緊急待避를 為하여 必要로 하는 避難設備에는

○ 避難사다리

○ 誘導標識 또는 灯

○ 救助袋 및 緩降機

○ 避難橋 미끄럼袋 避難用 타рап 等을 들 수  
가 있고 特殊高層建物에 對하여는 헬리콥터場을  
設置하도록 되어 있다.

(4) 大型火災時 給水確保를 為하여 必要로 하는 消火用水 設備는

○ 消火水槽

○ 貯水池等 其他 消火用水量 計한다.

(5) 特히 高層建物等의 火災時 消火活動上 必要로 하는 設備에는

○ 排煙設備

○ 連結撒水設備

○ 連結送水管設備

○ 非常콘센트 設備等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種類의 消火設備가 있으나 이와 같은 設備들은 各已 다 必要한 機能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消防對象物에 있어서 어느 한 部分만이라도 未備되어 있을 때에는 火災豫防이나 人命安全을 為하여 重大한 缺陷을 갖어 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高層建築物에 있어서 消防施設의 機能은 火災豫防이나 延燒擴大 阻止를 為하여 補完의 機能外에 根本의 豫防手段이 될 수 없다고 判斷하는 것은 결코 나ほ자만의 生覺은 아닐 것이다.

過去 大型高層建築物의 火災發生結果 分析에  
依하면 建築物의 構造의in 施設 即 防火區劃,  
内裝材의 不燃化 特別避難階段만 完備되었드라  
면 發火層 또는 그 室內에서 初期鎮火로 延燒擴  
大阻止가 可能하였으며 人命이나 財產上의 被害

도 最少限으로 減少시킬 수 있었다.

近間 消防檢查 結果에 依하면 大部分의 對象  
建物에 基本의in 消防施設은 갖추어져 있지만  
部分의in 未備施設의 补完이 過去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既히 完備된 施設의 事後管理  
에 適正을 期하지 못함으로서 故障發生率이 增  
加되고 있어 새로운 問題點으로 浮刻되고 있는  
바 앞으로 施設管理面에서 보다 正確을 期해야  
할 것이며 特히 이 分野에 對한 事業主의 關心  
을 促求하는 바이다.

## 라. 自衛消防體制

不特定 多數人이 常時 出入하거나 勤務하고  
있는 大型高層建物에 對하여 綜合의in 安全對策  
을 講究하기 為하여 基本의으로 갖추어져야 할  
事項은

(1) 建築物의 構造上 安全施設 確保

(2) 法定消防施設의 完備

(3) 自衛消防體制의 確立 等을 들 수 있다.

그러나 建築物의 構造의in 安全施設의 確保問  
題나 消防施設 完備 問題보다 더욱 重要한 것은  
自衛消防體制를 確立하여 防火管理에 完璧을 期  
하는데 있다고 본다.

企業을 運營하는 經營主의 立場에서 볼 때 防  
火管理 問題를 經營管理나 人力管理와 같은 次  
元에서 比重높게 檢討하는 境遇는 極히 찾어보  
기 드문 實態이다.

大型火災事件의 發生原因을 分析해 보면 모든  
火災事件이 防火管理의 疏忽乃至는 經營主들의  
無關心에서 起因되고 있는 것이다.

觀光호텔을 為始하여 모든 高層建物의 防火管  
理 問題는 法規上의 義務規定이기 以前에 經營  
主의 社會의in 責任인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建築構造上의 未備施設 补  
完이나 消防施設을 갖추는데 對한 投資를 할 境  
遇에는 目前의 反對給付를 期待할 수 없고 당장  
火災 事故가 發生하지 아니하는 限 問題될 것인  
없다는 생각 때문에 施設投資나 防火管理 問題

는 疏忽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實情이다.

오히려 行政指導에 依한 施設促進마저 不必要한 干涉이라고 生覺하는 境遇도 翁翁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境遇가 바로 法定施設(消防·建築)의 繼續的인 未確保乃至는 既存施設의 形式的인 維持管理를 하게 되고 不安全한 火氣取扱施設(電氣, 가스, 油類等)의 未改修, 資格을 가진 防火管理責任者の 未選任, 消防訓練의 忌避 또는 慵慢行爲等을 結果케 하는 것이다.

보다 具體的인 事例를 들어보면

(1) 屋內消火栓을 設置하여 놓고도 消防 호ース를 連結하지 않고 있는 事例

(2) 自動火災探知設備의 電氣스위치를 切斷하는 事例

(3) 誘導燈의 電燈配線을 連結하지 아니하는 事例

(4) 加壓 모터의 起動스위치를 作動不能 狀態에 두는 事例 等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事例에 對하여는 其間 數次에 걸쳐 施設補完 및 改修를 為한 行政命令과 反復되는 現地 確認指導를 通하여 行政措置 또는 依法措置를 하고 있으나 施設主의 誠意 없이는 是正이 어렵고 經營主 스스로가 防火管理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能動的인 自衛消防態勢를 確立시켜 나아감으로서 高層建物에 對한 大型火災事故를 事前豫防할 수 있을 것이며 人命의 安全을 圖謀하기 為한 最善의 對策이야말로 最高의 奉仕라는 信念 아래 企業을 運營하여야 할 것이다.

### 3. 問題點

現況에서 檢討된 바와 같이 高層建築物의 防火安全管理을 為하여 檢討되어야 할 問題點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建築構造上의 施設未備 补完

- (1) 防火區劃
- (2) 內裝材의 不燃化
- (3) 特別避難階段 構造確保

#### 나. 法定消防施設의 未備 및 維持管理疏忽

다. 施設主의 關心度 缺如 및 防火管理疎忽 等을 들 수 있다.

특히 建築構造上의 施設未備 事項에 對하여서는 建築當時 未備되어 있는 施設을 事後에 補完할 境遇 施工 技術上의 어려움이라든가 財政上의 問題點等 여려 가지 難點이 뒤따를 것으로 生覺은 되고 있지만 火災豫防이란 側面에서 보았을 때 時急히 補完되어야 할 急先務인 것이다.

어느 建築物이고 問에 建築構造上으로 區別이 完備되고 內裝材의 不燃化措置와 特別避難 階段을 活用할 수 있는 對策만 마련되어 있다면 高層建物의 大型火災는 充分히豫防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措置가 建築當時부터 充분히 檢討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消防法 第9條의 規定에 依한 建築許可等의 同意業務가 消防法令上의 消防施設 基準에만 適合하게 되어 있는지 與否에 對하여서만 意見을 提示하도록 되어 있고 建築構造 設備 分野에 對한 協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既存建築物에 있어서는 許可當時 適法하게 竣工된 建物에 對하여는 現行法上 適合하지 않아 火災危險이 높은 狀態라도 施設을 遷及補完토록 하는 規制條項의 未備等을 들 수 있는 것이다.

以上에서 指摘된 問題點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發生할 수 있는 高層建物의 火災豫防을 為하여서나 火災가 發生하였을 境遇 延燒擴大 滙止 人命被害防止를 為하여 時急히 補完策이 講究되어야 할 것으로 生覺된다.

消防施設面에 있어서도 建築竣工 當時부터 完備되었어야 할 固定 設備가 未備되었거나 既히 갖추어 놓은 施設이 維持管理의 疏忽로 故障이 發生되어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는 境遇가 있다.

消防施設은 未知의 將來에 發生할 수 있는 災害를豫防하고 警戒하기 為한 非常設備라는 觀念보다도 法定施設이니 形式이나 갖추어 놓으면 되겠지 하고 生覺하는 境遇와 消防施設에 對하

여 아무리 많은投資를 하여도反對給付를期待할 수 없기 때문에施設投資를 망설이고 있지 않을까하는生覺을 해본다.

事業規模에比하여極히些少한設備임에도繼續未備된狀態에서施設補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經營主의安全管理에對한關心이缺如된데 그原因이 있는 것으로 보아消防行政遂行上重要한問題點이 아닐 수 없다.

防火管理側面에서보았을 때 많은investment를 하여 갖춘消防施設을平常時整備를 하여恒常그機能을維持할 수 있도록管理가되어야 하며또한有事時에는 그建物의從事者들이 그施設을活用하여早期에鎮火할 수 있도록訓練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高層建物의收容人員에對한人命安全을爲하여는平常時待避誘導計劃을樹立하여建物構造의特性을考慮한待避訓練을 實施하여야하고從事者들의獻身의救助訓練과호텔과같은對象建物에 있어서는投宿客의安全待避를爲한防毒·防煙마스크와같은安全裝具의備置等最惡의狀況에對處할態勢가갖추어져야하겠다.

그러하지않음으로서高層建物火災時마다많은人命被害를發生케하고 있는 것이다.

毎月民防衛의날에 實施되고 있는消防訓練이라든가消防署에서 實施하는消防訓練指導는이디까지나消防行政機關의主導下에 實施하는義務의訓練일뿐對象處自體計劃에依하여自發的이고能動의訓練이平素에 實施되지않고있기때문에早期에鎮火可能한불도大火로擴大시키고많은財產과人命의被害를招來케하고 있는 것이다.

#### 4. 結論

現況과問題點에서여러가지狀況을檢討한것을要約하면建築構造上의施設未備로因한問題點에對하여는建築許可審議를爲한消防署長의意見聽取範圍가消防法令上의施設基準

適合與否와建築構造上防火設備分野까지도包含할 수 있도록關係法令改正이 이루어져야하겠고竣工된建物의內部構造를建物主任意로可燃性內裝材칸막이設備를規制하는法의根據가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973年以前에竣工된建物이라고할지라도構造적으로施設이未備되어 있는建物에對하여는優先적으로層間防火區劃內裝材의不燃化,特別避難階段의確保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法上遡及規定이없다는理由만으로施設改修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不當한論理이다.

消防施設이未備된對象建物의境遇도法定施設은義務의으로完備토록하고既存施設의維持管理에關心을기우려야 할 것이다.

高層建物의經營主는近視眼의인企業經營方法을止揚하고消防施設은人命安全을圖謀하고財產을保護하기爲한防災施設이라는觀點에서行政當局의指示나施設促求等行政作用에依하여被動의인施設補完姿勢를果敢하게脫皮하고自發의인施設投資로不安全未備施設을補完하여야 할 것이며此際에行政當局에서도強力한行政措置를斷行高層建物에對한消防施設의完備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施設補完뿐만아니라防火管理面에서도高層複合用途建物의特性을勘案하여經營主 스스로가많은收容人員이나投宿客들의生命保護의責任感을느끼고平素從事員들에對한教育訓練및施設의維持管理徹底,緊急避難時保護用마스크의備置等으로自衛消防體制를確立하고他分野의management業務에優先하여防火管理에關心을기우려야 할 것이다.

結論을集約하면어떠한制度나計劃이마련되었다고하더라도 이를 實踐하지못할境遇에는 아무런效果도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高層建物의防火management가圓滑하게이루어질수있는唯一한方法은經營主의誠意있고責任있는關心度에있다고배웁을지어본다.

〈끝〉